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6월 16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6월 16일

3. 제안이유

-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가. 연간 7일 이상의 년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년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자치단체장에게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함(안제19조 제2항 및 제26조의2)
- 나.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외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다.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 하도록 함 (안 제22조제4호)
- 라.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 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3)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공무원 복무규정이 1994년 5월 16일 대통령 제14262호로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불부합 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 국외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 단속은 재외공무원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과 아울러 복무 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과
- 근무년한에 따른 연가일수의 산정기준은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무한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적용토록하는 것이며
- 공무원이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종전까지는 연가일수를 분할사용토록 하던것을 전년가일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휴가기간의 활용을 자율화하고 자치단체장에게하는 신고제도를 폐지하였고
-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 할 때는 이에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 경조사별 휴가 대상중 결혼, 사망, 탈상의 경우 그 대상을 형제자매로 국한하던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하고 사망의 경우 백숙 부모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그 대상의 폭을 확대한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함과 아울러 복무관리체계를 확립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승인하여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칙 부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